

I. 펀드명 : 하나UBS 120/20 증권투자신탁[주식-재간접형]

II. 변경 사유 : 수익자총회를 통한 주된 투자대상 자산 변경

III. 변경대비표

<집합투자규약>

내용	변경전	변경후
펀드명	<u>하나 UBS 120/20 증권투자신탁[주식]</u>	<u>하나 UBS 120/20 증권투자신탁[주식-재간접형]</u>
제 3 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, 투자신탁의 명칭은 “ <u>하나UBS 120/20 증권투자신탁[주식]</u> ”으로 한다. ② (생략) 1. (생략) 2. <u>증권(주식형)</u> 3. ~5. (생략) ③~④ (생략)	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, 투자신탁의 명칭은 “ <u>하나UBS 120/20 증권투자신탁[주식-재간접형]</u> ”으로 한다. ②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<u>증권(재간접형)</u> 3. ~4. (현행과 같음) ③~④ (현행과 같음)
제 16 조(투자목적)	이 투자신탁은 <u>국내 주식을</u>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<u>적극적인 주식운동과</u> 주식의 차입매도 및 매수거래를 통하여 종합주가지수(KOSPI 지수)대비 추가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	이 투자신탁은 <u>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</u> 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<u>운용하고</u> 주식의 차입매도 및 매수거래를 통하여 종합주가지수(KOSPI 지수)대비 추가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 18 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	(생략) 1.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<u>80%</u>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<u>상장주식에의</u>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<u>60%</u> 이상으로 한다. 2.~4. (생략)	(현행과 같음) 1.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<u>50%</u> 미만 으로 한다. <이하 삭제> 2.~4. (현행과 같음)

제 20 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

- ① (생략)
- ② (생략) 제 2 호 내지 제 6 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는 (이하 생략)
- ③ 제 19 조제 2 호 본문, 제 4 호 및 제 5 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 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④ <신설>

- ① (현행과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 제 2 호 내지 제 5 호 및 제 6 호 가목, 나목 및 마목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는 (이하 생략)
- ③ 제 19 조제 2 호 본문, 제 4 호, 제 5 호 및 제 6 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 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④ 제19조제6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.
 1. 집합투자업자(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(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만 해당한다. 이하 이호 및 제3호에서 같다)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90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
 2.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(이하 “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”라 한다)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(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의 집합투자증권(외국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)
 - 가.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수가 30종목 이상일 것
 - 나.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(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기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)을 말한다)이

	<p>⑤ <신설></p>	<p>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.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간 영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</p> <p>3.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(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)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(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 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</p> <p>⑤ 제 19 조제 2 호 나목을 적용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(제 4 항 제 2 호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)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30 까지 투자할 수 있다.</p>
<p>제 45 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</p>	<p>① (생략) 1~2. (생략) 3. <u>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 억원에 미달하는 경우</u></p> <p>②~③ (생략) ④ <u>제 1 항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</u> (이하생략)</p>	<p>① (현행과 같음) 1~2. (현행과 같음) 3. <u>설정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</u> 4. <u>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</u></p> <p>②~③ (현행과 같음) ④ <u>제 1 항제 3 호 및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</u> (현행과 같음)</p>

<투자설명서>

내용	변경전	변경후
<p>펀드명</p> <p>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</p> <p>2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</p>	<p><u>하나 UBS 120/20 증권투자신탁[주식]</u></p> <p>증권(주식형)</p>	<p><u>하나 UBS 120/20 증권투자신탁[주식-재간접형]</u></p> <p>증권(재간접형)</p>
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

-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
-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
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

-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
 - 가. 투자대상
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

나. 투자제한

(생략)

1.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%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 이상으로 한다.

6.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% 이하로 한다. 다만, 법 234 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까지 투자할 수 있다.

집합투자증권투자
<신설>

(현행과 같음)

1.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% 미만으로 한다.
<이하 삭제>

6.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% 이상으로 한다.
<이하 삭제>

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

- 가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(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)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(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
- 나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
- 다.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
- 라.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
- 마.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,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한다.
- 바.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

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

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증권 적용특례
<신설>

집합투자증권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.

1. 집합투자업자(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(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. 이하 이호 및 제3호에서 같다)의 집합투자자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90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
2.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(이하 “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”라 한다)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(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의 집합투자증권(외국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)
 - 가.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수가 30종목 이상일 것
 - 나.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(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기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)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

다.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간 영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

3.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([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](#))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(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 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

- 제 19 조제 2 호 나목을 적용할 때

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(제 4 항 제 2 호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)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30 까지 투자할 수 있다.
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
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

국내 _____ 주식을 법 시행령

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(이하 생략)

- 차입매도 위험 관리
-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바탕으로 일반주식형 펀드의 리스크 수준에서 주식형 펀드대비 초과 수익 추구
- 차입매도한도 설정 및 지속적인 관리
섹터별 차입매도 한도 : 5%, 종목별 차입매도 한도 : 2%
- 차입매도(숏 포지션) 종목 유동성 위험
→ 종목 선정시 유동성 요인 우선적 고려 및

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을 법

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(현행과 같음)

- 차입매도 위험 관리
-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바탕으로 일반주식형 펀드의 리스크 수준에서 주식형 펀드대비 초과 수익 추구
- 차입매도한도 설정 및 지속적인 관리
종목별 차입매도 한도 : 10%
- 차입매도(숏 포지션) 종목 유동성 위험
→ 종목 선정시 유동성 요인 우선적 고려 및

지속적 모니터링

지속적 모니터링
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
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

주식가격변동위험 삭제 및 <신설>

재간접투자위험

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형 투자신탁이므로 다른 투자신탁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. 또한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입니다.

<간이투자설명서>

내용	변경전	변경후
펀드명	하나 UBS 120/20 증권투자신탁[주식]	하나 UBS 120/20 증권투자신탁[주식-재간접형]
제 1 부 집합투자기구의 개요	증권(주식형)	증권(재간접형)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	
5. 분류		
제 2 부 집합투자기구 투자정보	(생략)	(현행과 같음)
1. 집합투자기구의 주요투자대상	1.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<u>80% 이상</u> 으로 한다. <u>다만,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 이상으로 한다.</u>	1.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<u>50% 미만</u> 으로 한다. <이하 삭제>
	6.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% 이하로 한다. 다만, 법 234 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	6.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<u>70% 이상</u> 으로 한다. <이하 삭제>

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까지 투자할 수 있다.

제 2 부 집합투자기구 투자정보

2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

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

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(이하 생략)

- 차입매도 위험 관리
-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바탕으로 일반주식형 펀드의 리스크 수준에서 주식형 펀드대비 초과 수익 추구
- 차입매도한도 설정 및 지속적인 관리
섹터별 차입매도 한도 : 5%, 종목별 차입매도 한도 : 2%
- 차입매도(숏 포지션) 종목 유동성 위험
→ 종목 선정시 유동성 요인 우선적 고려 및 지속적 모니터링

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을 법

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(현행과 같음)

- 차입매도 위험 관리
-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바탕으로 일반주식형 펀드의 리스크 수준에서 주식형 펀드대비 초과 수익 추구
- 차입매도한도 설정 및 지속적인 관리
종목별 차입매도 한도 : 10%
- 차입매도(숏 포지션) 종목 유동성 위험
→ 종목 선정시 유동성 요인 우선적 고려 및 지속적 모니터링